



KISO

JOURNAL 2013 Vol.11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리뷰
'OOO 빨갱이'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 리뷰

기획동향

디지털 유산 논의의 흐름과 전망
디지털 유산 입법화 과정의 쟁점
미국 디지털재산 통일법 관련 해외법제 동향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 인식

법제동향

19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자율규제 관련 해외 기구 소개 및 최근 동향

이용자 섹션

신상털기로 본 한국의 인터넷 문화

학술탐방

한국언론법학회 활동 소개

서평

<열린 정부 만들기> 열린 정부 만들기의 선행조건
<거리로 나온 네티즌> 한·일의 신우익,
그 비동시성의 동시성

KISO 뉴스

KISO, 인터넷 음란물 근절 캠페인 실시
2013 KISO 상반기 워크숍 개최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리뷰

심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1. 정책결정의 배경

지난 5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 A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허위정보를 북한군 출신의 한 새터민의 일방적인 증언만을 가지고 '사실(Fact)'처럼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로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대중매체가 특정 지역과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TV조선과 채널A는 저널리즘의 기준에 따라 검증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아직 법적인 처벌이 남아있고 왜곡보도로 인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정서에 남은 상처는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회성 파문으로 그친 종합편성채널의 일탈행위와는 달리 인터넷 공간에서는 아직까지도 특정 지역과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특히 '일간베스트'와 같이 극우보수적 성향의 사이트에서 특정 지역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멀티 7시 방향'(온라인 게임에서 유래한 용어로 북한과 동일한 사상적 동질성을 지녔다고 주장하여 '멀티', 한반도 지도를 시계방향으로 볼 때 남동쪽에 있는 호남지역을 '7시 방향'으로 표현함으로써 '종북호남'이라는 비난을 간접적으로 지칭)과 같이 은유적이지만, 정치적인 진영논리와 이데올로기적인 배경이 있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이렇듯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

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비하나 왜곡, 모독은 유엔인권헌장의 정신을 위반하는 비인간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평화, 국민화합을 추구하는 국제체제마저도 위협하는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가반역, 국가전복 시도, 반정부단체 결성과 회합, 범죄 집단 결성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한 국가의 체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과 공안기관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도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체계를 위협하는 요소이지만, 직접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위협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이 공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법을 관대하게 적용해서라기보다는 대다수의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집단에서 소수만이 공유하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러한 비하와 왜곡, 차별이 미디어관련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 또는 유사 언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공간보다는 대부분 동호인 사이트나 정보공유 사이트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쉽게 적발하기가 어렵다. 특히

비하나 왜곡, 차별의 경우에는 국가체제를 폭력으로 전복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와 달리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해 비하하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을 통해 국민을 선동할 경우에 이를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국가도 있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을 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상과 맞물려 제기된 독일의 입법사례가 대표적이다. 독일은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을 통해 국민을 선동할 경우에 독일형법 제130조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130조는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잠재적으로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국민의 일부에 대한 거짓선동이나 일부 국민이나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할 목적으로 신문과 방송, 통신, 유사 방송(Telemedia) 등에서 출판물이나 저작물을 유포할 경우, 나치통치기간동안 발생한 범죄에 대한 찬성이나 범죄부인, 미화의 경우, 공개적으로 또는 집담회를 통해서 ‘아우슈비츠

(Auschwitz) 학살은 없었다'나 '홀로코스트(Holocaust, 유대인대학살)는 없었다' 등과 유사한 주장을 할 경우에 모두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최소 징역 3개월에서 최고 징역 5년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¹⁾ 특히 나치정권이 자국민의 일부이자 소수민족집단인 유대인을 학살했던 과거를 부정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독일의 형법 제 130조는 신문, 방송, 유사 방송, 통신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헌법재판소는 국민선동에 대한 헌재판결문에서 이러한 형법을 적용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²⁾ 이는 비록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잘못된 행위더라도 국민의 일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부분적으로 제한된 자유가 아니라 전적인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의 하위법령인 형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임의적인 법 적용이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이러한 의견표현이 공시된 과정과 환경을 고려한 맥락(context)에 따라 처벌을 해

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임의적인 법 적용을 금지하고, 국민선동에 해당하는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안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법적인 정당성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³⁾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이러한 법률적 제한이나 판례가 있지 않다.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자주 목격되는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 사회적으로 소수자나 약자, 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나 구성원, 태생적 속성에 대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과도한 비하와 왜곡은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사회적 공론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서 국가체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라나는 유·청소년들에게 극단적인 주장과 왜곡정보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올바른 토론문화와 사회적 공론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로 지칭)는 국가안보와 사회적 타협을 위협하는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정책결정 제15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인터넷 검색에서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검색어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⁴⁾ 이는 개인이 갖는 정치적 의사표현

1) Strafgesetzbuch § 130.

2) Volksverhetzung-Beschluss(1 BvR 232/97), Entscheidung der BVerfG vom 12. 11. 2002, AfP 2003, 41.

3) Fechner, F. & Mayer, Johannes C. (2012). Medienrecht: Vorschriftensammlung (Textbuch Deutsches Recht). C.F. Mueller Verlag.

4) KISO정책결정 제15호 개정 참조.

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만큼이나 개인의 인격권과 국가체제의 안정을 위한 사회통합도 중요한 헌법적 질서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향후 관련 심의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 정책결정의 내용

이번에 이루어진 정책결정 15호(17호로 개정된 것) 개정은 정책결정 제15호 제2항의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것이다.

- ② -3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관련된 연관검색어를 포털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지역·종교·사상·장애·인종·출신국가 등을 아우르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지양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정책결정 15호(17호로 개정된 것)를 개

정한 것이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서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회원사들의 고유한 기술적 처리방식을 통해 제공되는 편익장치이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이라 한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연관검색어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KISO는 회원사들이 지켜야할 연관검색어 등에 대한 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KISO의 연관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제15호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KISO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2. KISO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 ②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 ② -2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3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③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 ④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 ⑤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 ⑥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KISO의 결정문 개정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한 비하나 왜곡이 국가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 감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이 명백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하자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KISO와 포털운영자의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노정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KISO와 포털이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더라도 'ooo 빨갱이'와 같이 명백하게 국민을 선동하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한 글을 KISO나 포털이 사법당국의 요청이나 지시,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연관검색어가 삭제되더라도 인터넷 공간에서 모든 정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하위법인 형법이나 자율규제 조항으로는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정책결정의 의의

KISO의 정책결정 제15호 제2항의3 개정은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해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연관검색어의 처리와 관련된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개인적인 소통공간인 온라인에서 개인이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해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일부임을 고려하여, 해당 표현이 들어간 글을 모두 삭제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이용자가 의식·무의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연관검색어의 영역에서는 국가체제의 안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협할 수 있는 단어가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전파되고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어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정립한 것이다.

그러나 KISO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특정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에 대해 비하나 왜곡처럼 잘못된 정보나 허위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독일처럼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경찰과 검찰 같은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할 문제이지, KISO와 같은 자율기구나 포털운영자의 역할은 아니다. 또한 사법당국의 처벌에 앞서서 교육당국이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역사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국민선동행위는 역사와 문화, 사회현상을 이념과 진영논리로 해석하여 이

용하려는 정치권과 일부 사회집단의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위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서 미디어가 공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신뢰할만한 정보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국가적 사회적 위협을 감지하고 과도한 낙인찍기와 사회분열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연관검색어 삭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KISO JOURNAL

‘OOO 빨갱이’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 리뷰

배 영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KISO 정책위원

1. 심의 결정의 배경

인터넷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통해 공론 형성을 위한 채널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학습하며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공감과 연대를 경험할 뿐 만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차이’와 ‘다름’의 존재 또한 인식하게 된다. 이 때 ‘차이’와 ‘다름’의 인식이 건강하게 작용할 경우 우리 사회의 ‘관용’의 폭은 넓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의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개인들이 모여 소통하

게 되면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고 그 결과 합리적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각자의 지향에 따라 극단적 의견 표출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사회 심리학에서는 ‘집단극화’라고 개념화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지역차별과 여성혐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폄하, 그리고 보수적 가치에 대한 조롱이나 탈북자에 대한 비난 등이 최근 매우 높은 수위에서 나타나며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과 구성원의 태생적 속성이나 의견 표출에 대해 이루어지는 과도한 폄하와 비하는 사회적 낙인(烙印)으로 작용하여 온라인 공간을 건강하고 생산적 공론이

이루어지는 장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근거로 만들고 있다. 특히 우리의 유·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을 통한 전통적인 사회화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의 형성과 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에 심의가 이루어진 연관검색어 ‘000 빨갱이’는 개인이 갖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나 인격권,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향후 관련 심의에 있어 또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심의 결정 내용

심의번호 ‘2013심25’에서 이루어진 심의대상은 신청인의 이름인 000에 관련되어 노출되는 연관검색어 ‘빨갱이’이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연관검색어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그 삭제를 신청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심의 결정을 통해 제시된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이다.

‘빨갱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를 지칭하는 단어이나, 오랜 기간 동안 남과 북이 대치되어 온 우리사회에서

는 이 단어가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체제에 비판적이거나 심지어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자 등을 구획하거나 나아가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정책위원회는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단어가 특정인의 이름과 결합하여 특정인을 연관짓는 검색어로 함께 제시될 경우, 특정인의 성향을 극단화시키고 낙인찍는 효과가 너무 크고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해당 연관검색어에 대한 일정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전적인 의미로 빨갱이는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를 지칭하지만, 김득중(2009)에 의하면 빨갱이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본격 형성되었으며, 일반 국민과 대칭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즉, 해방 공간의 격렬한 좌우 대립과 건국 과정에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국사회의 주체와 대립되는 타자의 자리에 공산주의자를 대입하게 되었고,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특성을 가진 공산주의자를 대치하는 말로 빨갱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김득중, 2009).¹⁾ 아울러 전쟁과 분단 후 반공(反共)이 국시(國是)로 자리매김된 권위주의적 산업화 기간에는 빨갱이가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일련의 활동이나 인사들에게도 범주가 확대, 적용됨으로써

1) 김득중, 2009. 『‘빨갱이’의 탄생』, 도서출판 선인.

단순한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한국적 특수성을 갖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월드컵 응원시 나타났던 ‘붉은 악마’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색이 빨간색으로 변모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고양된 시민의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이제 빨간색이 갖는 원초적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지만, 빨갱이는 여전히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구획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 그 중에서도 공적 영역에 활동하고 있는 공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나 비판의 자유는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금번 심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정인의 이름과 함께 ‘빨갱이’가 연관검색어로 제시될 경우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즉, 연관검색어의 형성과 노출은 이용자 행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특정인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 결과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공인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매개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관검색어로 노출된 키워드 간 관계에 대해 사실 여부의 판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이용자에게도 노출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연상 작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사실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해당인의 행태나 성향을 낙인찍게 되는 측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기준에 의하면, 신청인이 공인이 아니거나, 공인일 경우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드러나야 심의대상 연관검색어에 대한 제어가 가능한데 이 사안은 이를 충족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먼저 ‘빨갱이’라는 용어는 사실의 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사 이것이 사실의 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위를 가릴 방법이 없으며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체계에서 그 진위를 가리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위 단어는 사실의 지적이라기보다는 비하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결정에 의한 판단기준으로는 이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표현의 자유 신장과 이용자의 책임을 제고해 신뢰받는 정보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는 기구의 목적에 비추어 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정책결정 제15호 제2항 제2호의 3을 추가하여,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본 사안을 그 첫 사례로 적용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지

양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표결절차를 거쳐 본건 심의대상이 정책결정 제15호(제19호로 개정된 것)제2조 제2항 제2호의3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이제까지 이루어져 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연관검색어에 대한 심의는 공인이 아니거나, 공인의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신청인에 의해 제시되어야 가능했었다(정책결정 17호 참조). 금번 심의 요청된 ‘000 빨갱이’의 경우, 신청인 000이 공인이고, 관련된 검색어인 ‘빨갱이’는 사실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추상적 의미가 내포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심의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 검색어가 특정인의 이름과 결합하여 연관검색어로 제시될 경우, 특정인의 성향을 지나치게 극단화하고 낙인찍는 효과가 크며,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회갈등이 과도하게 조장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관검색어가 이용자 행위의 축적결과라는 점과 공인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도 물론 존중되어야 하지만, 해당 검색어의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피해와 소모적 갈등의 소지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였을 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제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점이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통

해 도출되었다.

이에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기존 정책결정 속에 보완하여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사항에 대한 연관 검색어의 제어를 가능하도록 결정하여, 심의 후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3. 심의 결정의 의의

금번 심의 대상인 ‘2013심25’는 연관검색어의 처리와 관련된 결정이다. 이는 다시 말해 결정의 내용이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게시물 등의 처리와는 별개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2013심25’를 통해 특정인을 ‘빨갱이’라는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 표현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게시물 등을 통해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²⁾ 다수의 이용자가 의식·무의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연관검색어의 영역에서는 부정적 효과의 전파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어의 필요성을

2) 물론 게시물에 의한 표현의 경우에도 필요시 권리침해를 이유로 임시조치 등의 서비스 처리 절차와 제소를 통한 법적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정립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시대에 따라 정도와 범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은 일상적인 현상이다. 다원화와 분권화가 일반적인 최근의 사회적 흐름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자체는 어찌면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일상화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소통이 가능해진 지금의 상황은 성원들 간의 관용의 증가에 대한 기대도 나타나게 하지만, 새로운 갈등의 생산과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매우 높다. 인터넷 이용에서 검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연관검색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심의결정은 특정 개인에 대해 이루어지는 과도한 낙인찍기와 집단극화와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KISO JOURNAL

디지털 유산 논의의 흐름과 전망

유정석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운영실 팀장

1. 논의 배경과 국내의 사업자 정책 현황

2000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되며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국은 기록물 보존 및 문화유산의 보존 차원에서 디지털 자료를 축적하는 디지털 아카이빙(digital archiving)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가의 정책적 차원의 관심은 2003년 이라크 전에서 사망한 저스틴 엘스워스(Justin Ellsworth)라는 미국 병사의 죽음과 맞물리며 개인적 차원의 디지털 유산 논의로 이어졌다.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아카이빙 논의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가의 개인 차원의 디지털 유산 이슈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표 1>과 같이 국내의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유산 정책은 대부분 비슷한 측면이 있으며 접근권한 제공 및 백업 지원 등의 일

부분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자들은 대부분 유족에게 정보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법률 또는 사업자의 약관 등이 작용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와 통신비밀 관련 이슈 등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정책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Facebook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인화 서비스이면서 네트워크 서비스이고, 타임라인 페이지가 시간의 흐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이 추모 목적의 현상 유지 정책을 취하는 하나의 이유일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Twitter의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성이 강하며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유족과 사업자 모두에게 현상유지가 의미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공개된 트윗의 백업을 지원해주고 현상

유지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Daum과 SK커뮤니케이션즈, Yahoo, NHN의 경우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사망 확인 시 계정을 삭제하고 관련 정보를 영구 삭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만, NHN의 경우 공개게시물에 대해 유족임을 증명하고, 사망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백업서비

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구글의 경우 최근 휴면계정관리(Inactive Account Manager) 정책을 발표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없는 계정에 대해 제3자가 조건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정책은 한국의 디지털 유산 논의에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표 1>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유산 정책¹⁾

최대한 정보제공 ← → 최소로 정보제공

구분	상속인 권한							
	명의 변경	비밀번호 제공	접근권한 제공	백업		서비스 현상유지	이용 해지	계정삭제 (이용내역 영구삭제)
				공개 정보	비공개 정보			
NHN	×	×	×	조건부 지원	×	×	○	○
Daum	×	×	×	×	×	×	○	○
SK커뮤니케이션즈	×	×	×	×	×	×	○	○
google (YouTube)	×	×	조건부 제공	조건부 지원	조건부 지원	×	○	○
Yahoo	×	×	×	×	×	×	○	○
Facebook	×	×	×	×	×	○	○	○
Twitter	×	×	×	○	×	×	○	○

※ 각 사의 정책을 바탕으로 재구성

1) <표 1>은 상속인이 디지털 유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보여준다. <표 1> 상단의 권한은 사업자가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권한이며 좌에서 우로 갈수록 상속인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권한은 약화된다. 명의변경의 경우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되는 것으로 가장 강하게 상속인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측에 있는 이용해지나 계정 삭제의 경우, 상속인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없고, 사망자가 이용했던 전체 서비스와 데이터는 이용이 해지되며 계정이 폐쇄되고, 이용했던 모든 기록도 영구삭제 되어 상속인의 권리를 가장 약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비밀번호 제공은 명의변경과는 달리 비밀번호를 부여받더라도 일정기간 후 사망자 계정이 폐쇄될 것이므로 명의변경보다는 약하게 권리가 보장된다. 이외의 용어 설명으로, 접근권한 제공은 상속인이 명의변경이나 비밀번호 제공 등을 받지 않고, 사업자가 상속인에게 신규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URL 등을 제공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며, 이보다 약한 권리보장으로써의 정보의 백업(공개된 정보, 비공개 정보), 그리고 서비스 현상유지는 사망자가 이용했던 서비스를 폐쇄하지 않고 비밀번호나 접근권한, 백업 등을 제공해주지 않으며 서비스의 현상만을 유지해준다는 의미이다.

2. 한국에서의 논의 경과 : 국가와 시장의 노력

한국 사회에서의 디지털 유산 논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희생 장병의 미니홈피 유지관리 이슈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며 촉발되었다. 디지털 유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김금래, 유기준, 박대해 등의 국회의원은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디지털 유산 논의를 국회로 가져갔다.

2010년 3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로 사망자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관리,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전반적인 디지털 유산의 처리를 다루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3개의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19대 국회로 바통이 넘겨졌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장실 의원이 2013년 5월 22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의안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성과 고인 추모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이 디지털 유산의 소유 및 관리권한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게시·획득·보관·관리한 정보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험,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 선불전자지급수단, 그 밖에 사망한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전송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관 중인 공개 또는 비공개의 게시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정의하였다.²⁾ 또한, 유서 등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 처리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도록 하였다.

국회의 논의와는 별도로, 사업자 차원에서 노력도 지속되어왔다. 국내 주요 포털이 주축이 되어 발족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정책위원회를 통해 2010년부터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한 자율규제 정책을 논의해 왔다. 2010년 9월에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디지털 유품이 무엇이고, 사업자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였다.

이후 KISO는 세미나와 정책 협의 등을 바탕으로 2011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초창기 연구에 속하는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개인정보, 계정, 게시물 등)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는 학계, 법조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NHN, Daum, SK커뮤니케이션즈, KTH 파란닷컴 등의 주요 포털 실무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 유산의 합리적 처리 방안으로 법률에서 기본방향을 규율하고

2)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검색일 : 2013.6.14.)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_C_Z1K3N0J5G2Z2T1X6K4S0L5X1H1G4Y7

자율규제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자율규제 기준 또한 검토되었으나, 사업자 공통의 시행 기준으로 삼기에는 현행 법규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요청이 미미하고, 사회적 논의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잠정 보류하기로 하였다.

3. 해외에서의 논의 경과 : 미국의 사례

국내에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 KISO를 중심으로 한 민간자율규제 차원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해외의 경우에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미국이 디지털 유산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03년故 저스틴 엘스워스 병장의 유족과 야후의 소송에서 출발하여, 최근 미국 통일법위원회에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수탁자의 접근권한 등에 관한 법률(기고자 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³⁾이다. 법안의 초안은 2013년 7월 회기에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초안은 매우 흥미롭다. 우선, 법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개념정의

가 명확하지 않았던 용어들에 대한 정의 작업을 광범위하게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콘텐츠(contents), 계정(digital account), 디지털 자산/디지털 재산(digital asset/digital property), 정보(information), 기록(record) 등과 같은 용어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유산과 관계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개념정의 시도는 국내에서 디지털 유산 처리를 고민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사망자의 능동적 행위가 담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광범위한 디지털 정보에 대해 “기본적으로” 상속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그에 따라 적법한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사업자로부터 계정 접근 권한, UCC, 텍스트, 부호 뿐 아니라 로그기록에 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미국 시장 영역의 사업자 사례로는, 2013년 4월 구글이 디지털 유산과 관련하여 발표한 휴면계정관리서비스가 대표적이며 핫이슈이다. 구글이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이용자가 구글 계정을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정은 휴면계정이 되며 동시에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콘텐츠를 가족, 친지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이용자가 백업받을 수 있다.

구글의 정책은 기존의 국내외 사업자들의 정책과 비교하면 획기적이다. 무엇보다, 유족이 사망자의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

3)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 2013.5.31.

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유족은 콘텐츠의 공개/비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단위로 디지털 유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제공에 차별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 또한 없지 않다.

다만, 구글은 신뢰할 수 있는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뢰할 수 있는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근하더라도 계정이 폐쇄되거나 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이용자임을 입증하고, 데이터를 수령하기까지는 이용자의 입증, 구글의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이용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구글의 승인 단계에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4. 향후 전망

디지털 유산 논의는 한국과 미국의 이슈일 뿐 아니라 디지털 인류 모두의 현안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통일법의 진행방향에 따라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세계 최대 사업자인 구글이 내놓은

정책이 통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김장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입법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NHN은 구글 정책 발표 이전부터 공개 게시물에 대해 간단한 구비서류 증빙이 있는 경우 백업을 제공해오고 있다.

향후 디지털 유산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국가별로 처한 시장의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유산 논의 전개 과정에서의 공통적인 부분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유족이 사망자의 데이터에 접근을 요청하자 거절당하거나 극히 일부의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사회적 반향이 일었으며, 국가 차원의 입법 이슈가 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넷 분야는 그 역사가 매우 짧고 기술적 특성이 오프라인의 현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또한, 기술의 변화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혁신적이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 유산 논의에 기술과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 차원의 공적 규제와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가 협력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디지털 유산 입법화 과정의 쟁점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디지털 유산의 의미와 특징

1) 디지털 유산의 의미

디지털 유산(디지털 遺産: digital inheritance or digital estate)이란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로 정의할 수 있다. 디지털 유산을 이처럼 정의하더라도 법적 평가에 의하여 실제 승계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예를 들면, 민법 제1005조 단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디지털 형태의 재산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은 디지털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며, 기술의 발전이나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유산이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및 서비스 상황 하에서 문제되었거나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인터넷상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UCC(User Created Content), 디지털 형태의 음악이나 동영상 등 저작물, 상표, 디자인,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상의 각종 게시물, 댓글, 도메인이름, 계정(account), 아이템(item), 아바타(avatar), 게임머니나 가상화폐와 같은 전자적 형태의 지급결제수단 등 사람이 디지털 형태로 보유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유산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3) 디지털 유산의 특징

디지털 유산은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온라인상에 존재하고, 다양한 성질을 지닌 정보가 융합·결합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보의 통제·

관리에 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 유산을 현행법상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나아가 미흡한 경우에 어떠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 현행법 해석론과 쟁점

현행법상 사망자의 유산을 일정한 범위의 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로써 민법상 상속제도가 있다.¹⁾ 상속을 통하여 구체적 재산의 형태를 묻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속해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 디지털 유산의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하여 그 승계가 특별히 인정되거나 부인되지 않는 한 민법상 상속제도에 의하여 일반적·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민법상 상속제도에 의하여 승계가 인정되는 것들은 그에 의하여 법적 처리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서 일정한 법적 규율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존재하는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순차적 검토를 위하여 먼

저 현행 상속법의 규정을 보면, 디지털 유산도 기본적으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현재 여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계정이나 블로그 등과 같은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허용할지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을 가지는 것은 명확한 해석론을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저작권권 외에도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디지털 유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성격의 디지털 재산이 서로 결합·혼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재산을 구분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상속가능한 정보와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성격의 정보가 혼재된 경우에 무수히 많은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중에서 각각을 선별하여 승계를 허용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불가능에 가깝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비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이를 보충하여 상속가능한 디지털 유산을 비교적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절차를 두거나 사전에 사망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유도·촉진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민법 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사망자의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가 있다.

3.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입법화 노력

제18대 국회에서는 유기준의원 대표발의안(2010.7.12. 발의 의안번호 8831), 박대해의원 대표발의안(2010.7.21. 발의 의안번호 8895), 김금래의원 대표발의안(2010.9.9. 발의 의안번호 9300)이 제안되었으며, 제19대 국회에서는 김장실의원 대표발의안(2013.5.22. 발의 의안번호 1905056)이 제안되었다. 김장실의원 대표발의안에 의하면, 이용자가 생전에 획득한 게임아이템, 작성한 게시물, 관리한 미니홈피·블로그 등을 디지털 유산이라 하고, 그 소유 및 관리권한의 승계에 관한 규정과 제3자의 이익제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안 제44조의11제1항),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도록 하였다(안 제44조의11제2항). 또한 디지털 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안 제44조의11제3항).

4. 입법화에 대한 평가

유기준의원 대표발의안, 박대해의원 대표

발의안, 김금래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는 선행 연구자료를 살펴보고길 권한다.²⁾ 가장 최근 발의된 김장실의원 대표발의안만을 살펴보면, 상속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의 상속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게임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 게시물에 대하여만 규정함으로써 적용상의 명확성은 높였지만, 그 외의 디지털 재산에 대한 규율의 가능성은 배제함으로써 규율의 사각지대를 남겨두었다는 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해관계자가 이익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상속권을 하위법령에 의하여 제약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5. 입법화 제언

민법상의 상속규정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현실적·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디지털 유산에 관한 사망자의 의사를 생전에 명확히 하도록 하여 사망 확인 시에 그에 따

2) 최경진, “디지털 유산의 법적 고찰 - 온라인유산의 상속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제46권제3호(2011), 253-287면 및 필자가 공동 연구책임자를 맡은 김현수·최경진·조영기·김정혜, 디지털 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1.

라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유언과의 관계에서 유언의 형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강행규정인 민법 상 유언규정과 충돌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법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전에 디지털 유산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계정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 혹은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으로 삼도록 한 후에 이용자가 그에 따라 선택한 경우에는 유언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와 피상속인인 이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사인계약(死因契約)이 성립된 것이고 그에 따른 이행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언법과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³⁾ 아울러 상속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도록 하는 절차도 디지털 유산의 경우에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절차로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기술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상속인 이외의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에게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리를

허용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이상은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과는 별도로 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민법과도 모순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종교나 친목을 위하여 운영되던 카페나 블로그 등과 같이 디지털 유산의 경제적 가치는 전무하거나 매우 희박하지만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유산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상속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057조의2에 의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유산의 형성이나 관리 등에 참여했던 카페나 블로그 회원이나 관리자 등에게 민법상의 특별연고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특별연고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상속받을 자가 없는 때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승계 제도를 참고하여, 디지털 유산의 형성이나 관리 등에 관여했던 자로서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에게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게 되는데, 이 때 그 가치를 심사하여 국가귀속 또는 디지털 유산을 보유하는 온라인

3)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등과 이용자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사인계약의 내용이 이용자의 사망 후에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핵심이 되는 계정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을 위하여 제3자가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하는 때의 처리방법에 대한 선택도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삭제를 요구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⁴⁾

나아가 디지털 유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이용자가 자신의 유고시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등의 정보를 임치해둘 수 있는 디지털 유산 에스크로우(Escrow) 서비스를 제도화하거나 공인전자문서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KISO JOURNAL



4) 입법론으로서 상속개시 단계부터 국가귀속 단계에 걸쳐서 상속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방치되고 있거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희박한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공공재적 성격이 다분한 인터넷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자원 낭비의 방지를 위하여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디지털재산 통일법 관련 해외법제 동향

김경환 /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

1. 디지털 유산 처리 문제의 부각

1969년 아르파넷(ARPANET)으로 시작된 인터넷은, 199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의 등장으로 폭발적 성장을 하였고,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현재는 전 세계 생활인의 필수적 네트워크가 되었으며, 나아가 정보생산의 핵심적 장(field)이자 창(window)으로서 기여하고 있다.

정보생산의 주체가 초기의 포털과 같은 서비스 기업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터넷 공간은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로 넘쳐났고, 정보의 형태도 단순한 글, 이메일이 아닌 사진, 동영상, 음원, 애니메이션 등으로 진화하면서 질적 가치로 보나 양적 수량으로 보나 급속한 성장을 하였다.

그 사이, 언젠가는 사후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운명을 지닌 정보생산의 주체는 자신이

생산했던 불멸적인 정보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정보주체의 고민이 바로 디지털 유산의 상속 문제인 것이다.

2. 디지털 유산 처리의 역사

온라인 디지털정보는 정보주체가 생산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포털업체의 공간을 활용해서 저장·재생산되는 관계로, 정보생산의 주체이지만 포털의 이용자에 불과한 소비자로서는 자신이 포털 공간에 축적한 디지털 정보를 사망시 자신의 후손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간 주도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포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미국의 이라크 참전 해병인 저스틴 마크 엘스워스 병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2004년 11월경 그의 부모가 이메일 계정 접

근을 거절한 야후(yah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후의 미국 판례 추세와는 달리 이 소송에서 유족은 승소하였지만, 이 판결은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역할까지는 하지 못하였다. 이는 포털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었다.

그러던 중 2013년 4월 11일, 세계 최대 포털인 구글(Google)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디지털 세계의 질서를 재편할 역사적인 서비스를 개시했다.¹⁾ 서비스의 명칭은 ‘휴면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이 서비스 안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디지털 유산 상속을 포괄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에, 포털 전체에 흩어져 있는 사망자의 디지털 재산을 별도로 보존하고 전달하여 주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시켜 주었다.

3.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게시글, 음원, 사진, 동영상, 이메일, 아이템 등의 디지털 유산은 정보로서의 성격도 가지

고 있고 재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디지털 유산의 상속 문제는 정보법의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재산법의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 이 문제가 정보법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의 성격이 강한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재산법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디지털 유산의 상속이 당연한 것이 된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문제를 정보법으로 접근하여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부정적이며,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의 우리나라 포털은 사망자 계정을 폐쇄하거나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이나 미국의 일부 주는 재산법적으로 접근하여 또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6개주(2005년 코네티컷주, 2007년 로드아일랜드주·인디애나주, 2010년 오클라호마주, 2011년 아이다호주, 2013년 버지니아주)는 이미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대하여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미국의 19개 이상의 주는 현재 입법화 과정에 있다. 나아가 2011년부터는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가 각 주의 법률을 통일할 수 있는 디지털재산 통일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Cnet(2013. 4. 11.). Prepare a digital will for your Google accounts. Available : http://news.cnet.com/8301-1023_3-57579113-93/prepare-a-digital-will-for-your-google-accounts/

4. 미국의 디지털재산 통일법 초안

디지털재산 통일법(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이하 ‘통일법’)의 초안은 회의 및 검토 목적으로 여러 차례 통일법위원회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통일법위원회는 법조인 자격을 가진 미국 각 주 파견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1982년부터 통일적인 법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디지털재산 통일법 초안은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기존의 주법들을 수용·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원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하여만 다루고 있지 않다. 디지털재산 통일법은 크게 사망자 디지털재산의 상속 및 관리, 법정대리인에 의한 무능력자 디지털재산의 관리, 임의대리인에 의한 디지털재산의 관리, 신탁에 의한 디지털재산의 관리의 4가지 부분을 모두 다루고 있다. 금년 초에 발표된 두 번째의 초안(2013년 1월 18일) 중 디지털 유산 상속을 중심으로 이 법의 특징과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일법은 한마디로 디지털재산 관리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재산의 상속에 한하여 다루지 않고, 한 개인의 디지털재산을 그 자신이 아닌 대리인·수탁자 등이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루고 있으며, 사망자의 디지털재산의 사후 관리를 위와 같은 여러가지 경우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011년 9월경, 맥아피(McAfee)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당 2,777개의 디지털 파일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37,438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디지털 자산이 55,00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²⁾ 통일법은 이러한 정보자산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을 잘 반영한 것이며,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선구적으로 정보자산의 대행적 관리가 필요한 여러 경우를 모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재산에 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존재한다(제2조). 즉 디지털재산(Digital Property)을 디지털계정(Digital Account)과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디지털계정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정의하며, 디지털자산은 디지털기기 또는 디지털기기상의 전자수단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와 디지털계정의 접근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버지니아 주법이 디지털계정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디지털계정과 디지털자산의 모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한 입법은 미국 내에서는 최초이다. 다만 통일법 내에서 디지털계정과 디지털자산의 법적 취급이 다르지 않아서 구별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

2) The Wall Street Journal(2012. 8. 31.). Passing Down Digital Assets. Available :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3713704577601524091363102.html>

문이 있다.

셋째, 디지털 유산(=디지털재산) 상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4조(“유언장 또는 공식절차에 의한 명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인격대표자는 사망자의 디지털 재산을 적용법령 및 유효하게 적용되는 서비스계약약관 하에서 가능한 최대범위까지 정당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디지털 유산 상속에 있어 상속인을 이해관계인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이 디지털 유산 상속에서 중심적인 지위로 다루어지지만, 기존의 여러 주법과 달리 통일법 초안은 상속인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 통일법 초안이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는, 이 법이 상속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인격대표자(우리법의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의 권한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디지털 유산 상속의 제한요소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제4조). 디지털 유산 상속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제한요소로는, 피상속인의 의사, 법원의 명령, 법령상의 제한, 디지털재산에 얽힌 계약관계 등이라 할 것인데, 통일법 제4조는 이에 대하여 압축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다.

통일법이 상속의 제한요소를 이처럼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법위원회가 디지털

유산 상속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기보다는 상속 자체는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상속 과정상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인격대표자의 권한을 조절할 것인가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구체적인 상속절차(제8조)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절차(제9조)가 마련되어 있다. 통일법 제8조는 상속에 필요한 서류 또는 인격대표자의 권한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9조는 상속과정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서면으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15일 이후 60일 이내에 심문절차를 거친 다음 인격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게끔 했다.

구체적인 상속절차는 코네티컷 주법, 로드아일랜드 주법, 인디애나 주법, 버지니아 주법에도 기술되어 있던 것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며, 이해관계인의 이해절차는 버지니아 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버지니아 주법은 미성년 사망자의 디지털기록의 공개에 초점을 맞춘 법이기 때문에, 이의절차의 목적이나 내용이 버지니아 주법과는 상이하다.

통일법은 아직 초안에 불과하고, 이 초안을 토대로 많은 논의와 회의검토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기존법 체계에 맞추어야 하므로, 최종안은 초안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6월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세 번째

초안(2013년 5월 31일)은, 디지털계정을 계정 보유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을 디지털기기 또는 디지털정보전송시스템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 등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정보상속에 관한 포털의 면책에 대한 사항도 새롭게 기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몇 가지 수정된 조항들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트렌드 특히 미국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ISO JOURNAL

5.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안

세계 각국의 추세에 발맞추어 2013년 5월 22일, 우리나라 제19대 국회에서도 지난 18대의 3차례 입법안에 이어, ‘디지털 유산에 관한 상속’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김장실 의원 등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유산 상속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준용법을 민법상속편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를 정보법의 시각에서 벗어나 재산법의 시각으로 보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사망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상속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 인식

김지은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협력실 선임연구원

1. 조사 목적

한국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보급 당시 20세 전 후반의 청년층은 어느덧 중년층이 되었고, 영유아기부터 인터넷, 모바일을 접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인터넷 사용인구의 나이 들은 다른 세상의 다른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보는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갑작스런 사고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자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기 시작한 결정적 사건은 2010년의 천안함 사건으로, 전사한 장병들의 미니홈피 관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의 계정 소유자가 더 이상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이용자

가 남기게 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와 법제도에 관하여서는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에 한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정작 정보의 소유자이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혹은 가족의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드물게 접근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KISO는 KISO저널 11호의 기획동향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살펴보는 동시에,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응답자 특성

본 설문 조사에 앞서 디지털 유산의 처리에 대한 문항 구성을 위하여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15명을 대상으로 간략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남겨주고 싶은 디지털 유산의 종류나 이유, 받고 싶은 디지털 유산의 종류나 이유 등 구체적인 응답을 1차적으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의 문항과 선택지를 구성하였다.

사전 서면 인터뷰에 이은 본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2013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20일간 실시되었다. 응답자는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열어두고 KISO홈페이지, SNS와 독립커뮤니티의 협조를 통해 모집하였다. 조사 문항은 응답자가 자신의 답에 따라 최소 9개~최대 22개 문항에 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총 소요 시간은 약 3~5분으로 간단하게 설계되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511명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62.6%(320명), 여성 37.4%(191명)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만 17세부터 만 52세까지 고르게 분포하면서 평균 30.10세(표준편차 6.293)로 나타났다. 단, 20대와 30대의 응답자가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기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온 연령층이 주요 응답자층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직업은 직장인(59.5%, 304명), 대학생 및 대학원생(26.8%, 137명) 순으로 나타났고, 직

장인 중 약 40%가 IT관련 업계의 종사자라고 응답하였다. 기타 직종으로는 주부, 무직 등이 기록되었다.

<표 1> 응답자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91	37.4
	여성	320	62.6
연령	10대	22	4.3
	20대	216	42.3
	30대	229	44.8
	40대	40	7.8
	50대	1	0.2
	무응답	3	0.6
직업	학생(고등학생 이하)	10	2.0
	대학생 및 대학원생	137	26.8
	직장인	305	59.7
	자영업	38	7.4
	기타	21	4.1
- 직장인 중 직종	IT 관련	121	39.8(23.7)
	IT 관련 아님	183	60.2(35.8)
블로그, SNS 등 운영 여부	운영함	411	80.4
	운영하지 않음	100	19.6
블로그, SNS 등 확인 빈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69	13.5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	99	19.4
	보통이다	85	16.6
	종종 확인한다	115	22.5
	매우 자주 확인한다	143	28.0

※ 괄호 안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직종 응답자의 비율임

응답자 중 80.4%가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지를 1(전혀 확인하지 않는다)~5(매우 자주 확인한다)의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은 3.32(표준편차 1.407)로 보통보다 다소 자주 확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블로그나 SNS를 자주 확인한다는 응답이 50%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지 기술한 응답자의 특성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3. 조사 결과

1) 나의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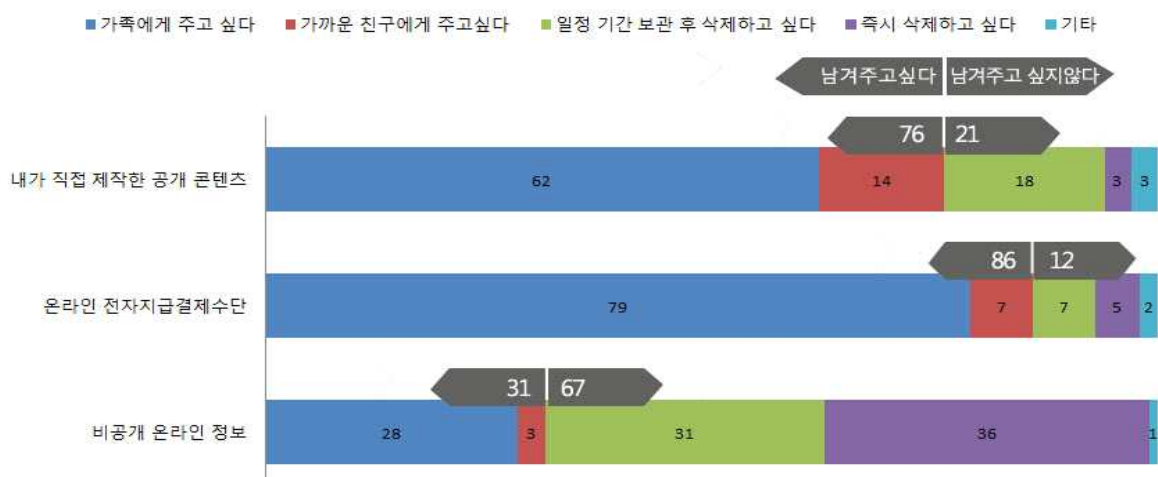
응답자의 58%는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 참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내가 직접 제작한 공개 콘텐츠(76%)와 온라인 전자지급결제수단(87%)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답하였으며, 67%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 비공개 온라인 정보를 일정기간 남겨두었다가 삭제하거나 즉시 삭제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최대한 오래 보존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전체공개하고 싶다” 등이 있었다.

<그림 1> 자신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생각(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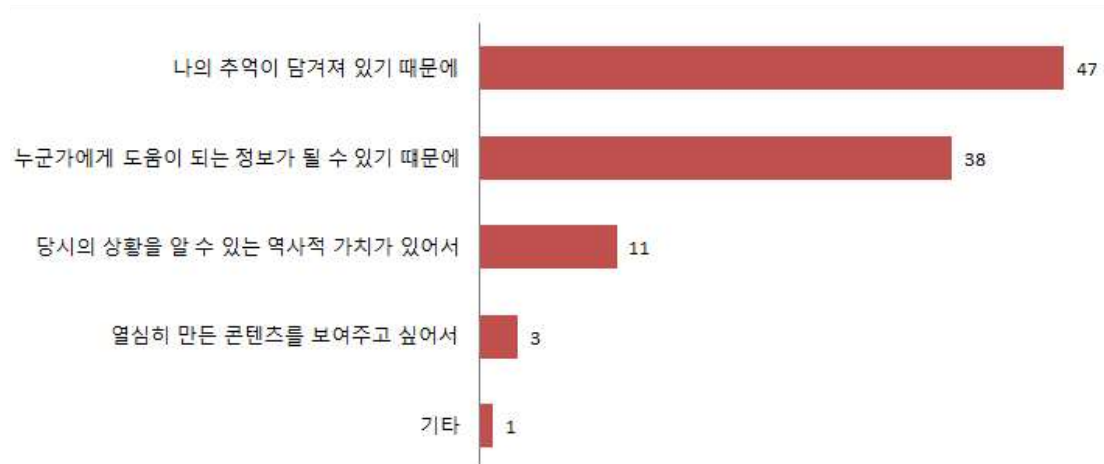
<그림 2> 남기고 싶은 디지털 유산의 종류별 처리 방식(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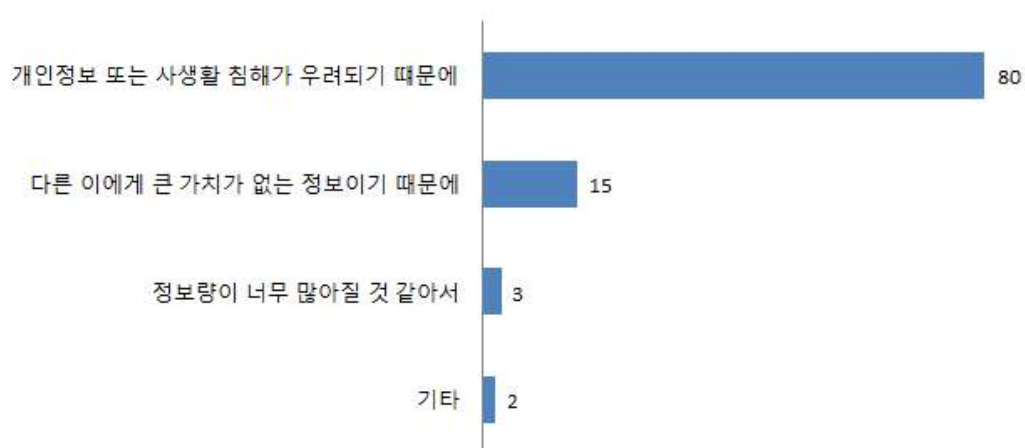
특히, 내가 직접 제작한 미니홈피, 블로그, SNS, 사진 등의 콘텐츠와 사이버 머니 등의 온라인 전자지급결제수단의 경우 가족에게 남기고 싶다는 의견이 각각 62%, 79%로 가장 많았다. 비공개 온라인 정보 역시 일정기간 보관 후 삭제나 즉시 삭제를 원하는 응답자가 많았지만, 가족에게 주고 싶다는 의견도 28%로 나타났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그림 2> 참고). 남겨주고 싶은 이유로는

주로 <그림 3>과 같이 나의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로 집계되었고,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1%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 “금전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3>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은 이유(단위: %)



<그림 4>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단위: %)



반대로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80%가 개인정보 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최근 높아진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의견으로는 “자취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남겨진 정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라서” 등의 이유가 기록되었다(<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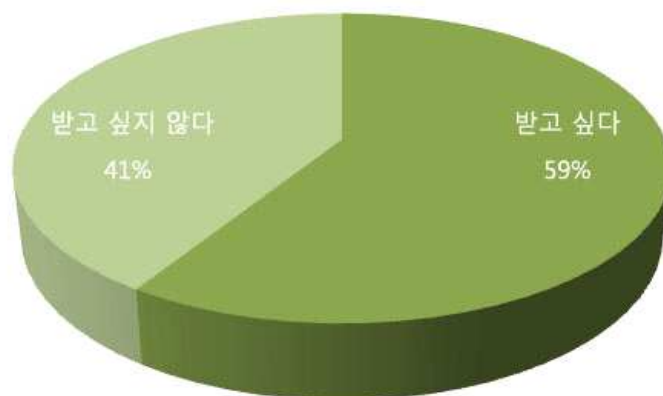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남길 의향이 있으며, 추억을 공유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직접 제작한 공개콘텐츠나 온라인 전자지급결제수단을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7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정보 등의 비공개 콘텐츠는 남

겨두고 싶지 않으며,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의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59%). 그 중에서도 가족이 직접 제작한 공개 콘텐츠(78%), 온라인 전자지급결제수단(85%)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높은 수치로 나타난 반면, 가족의 비공개 온라인 정보를 받고 싶다고 한 응답도 34%의 수준으로 나타나 즉시 삭제하고 싶다는 응답(2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고).

<그림 5> 가족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안에 대한 생각(단위: %)



<그림 6> 받고 싶은 가족의 디지털 유산의 종류별 처리 방식(단위: %)



※ 별도 표시된 수치는 기타 항목을 제외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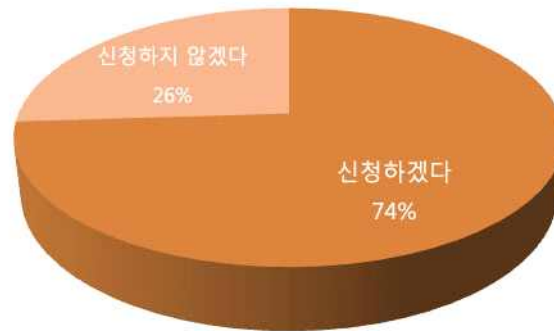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은 이유로는 추억이 있기 때문(7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보의 활용을 위해(16%),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다는 응답자 중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유료로 받아야 한다면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74%의 응답

자가 신청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 유료 콘텐츠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이 점차 일반화 되어가는 동시에, <그림 7>과 같이 가족의 추억을 간직하고자하는 응답자가 다수였기 때문에, 유료 일지라도 기꺼이 디지털 유산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70% 이상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7>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은 이유(단위: %)



<그림 8> 가족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유료 신청 의향(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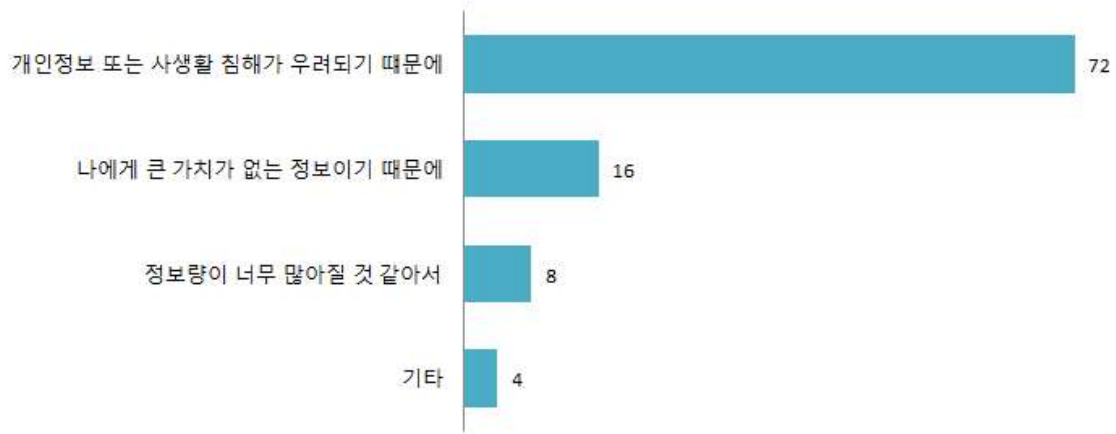


가족의 디지털 유산 중 받고 싶지 않은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46%의 응답자가 비공개 온라인 정보라고 답하여, 앞서 자신이 남기고 싶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로 집계된 반면,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빠짐없이 모두 받고 싶다는 응답(42%)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9> 참고). 기타의견으로는 “가족과의 추억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싫다” 등의 의견이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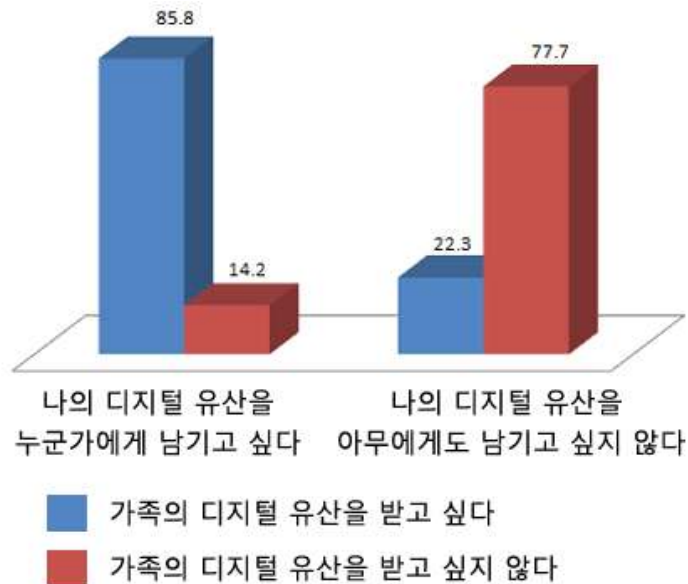
이에 덧붙여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남기는 것과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다는 응답자 중 85.8%가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반면,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 중 77.7%가 가족의 디지털 유산 역시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49.7%의 응답자가 나의 디지털 유산을 남기고 싶은 동시에 가족의 디지털 유산도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나의 디지털 유산을 남겨주기도,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기도 싫다는 응답자도 32.7%로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그림 10> 참고). 즉,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지의 여부에 따라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자 하는 의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207.655$, $df=1$, $p<.001$).

<그림 9>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단위: %)



<그림 10> 자신과 가족의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인식(단위: %)



3)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에 대한 인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유산은 서비스의 측면과 법·제도의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의 처리가 더욱 적절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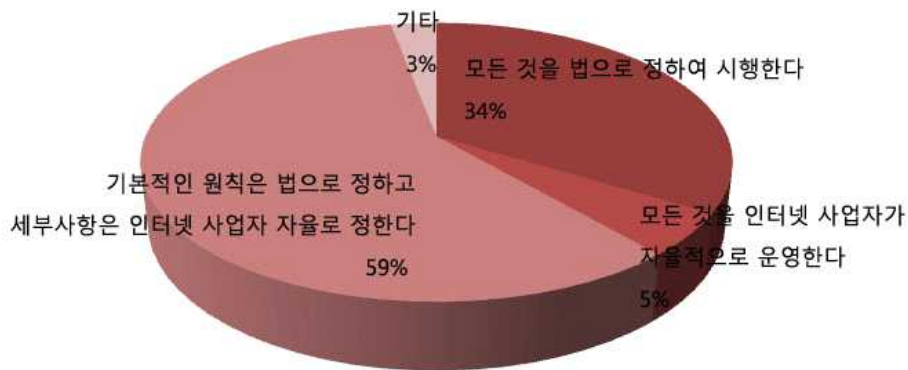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기본적인 원칙은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로 운영하는 공동의 운영 방식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59%). 반면,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34%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이용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절

차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일부 나타났다.

특히 성별, 연령대별, 직업별,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적, 사업자 자율적 등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식을 다르게 선택하는지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chi^2=30.875$, $df=3$, $p<.001$)과 직업($\chi^2=31.180$, $df=12$, $p<.01$), SNS의 운영 여부($\chi^2=18.918$, $df=3$, $p<.001$)에 따른 결과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성별에 따

른 차이는 남성 응답자의 50.5%가 기본적인 원칙은 법으로, 세부 사항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로 운영한다고 응답하였고, 41.9%가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72.8%에 이르는 응답자가 ‘원칙은 법으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2> 참고). 즉,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1>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단위: %)



<그림 12> 성별에 따른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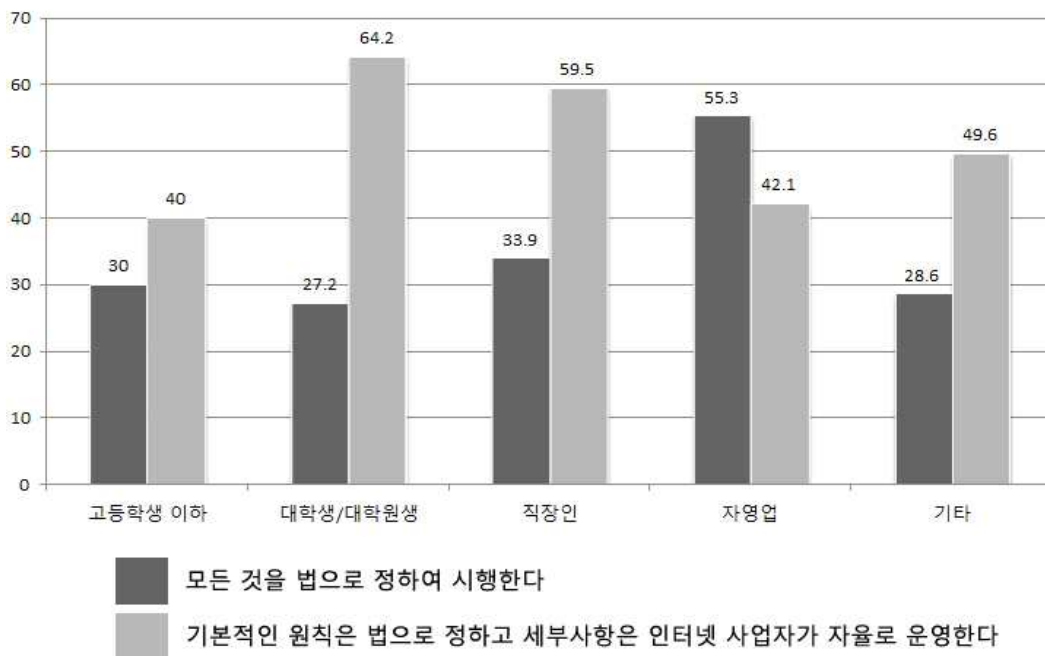


또한, 직업에 따라서도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림 13>과 같이 직장인보다 대학생인 경우에서 법과 사업자 자율로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66.2%)과 법으로 모든 것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27.2%)의 차이 폭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났다. 또한 유일하게 자영업 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모든 것을 법으 로 시행한다는 비율(55.3%)이 더 높게 나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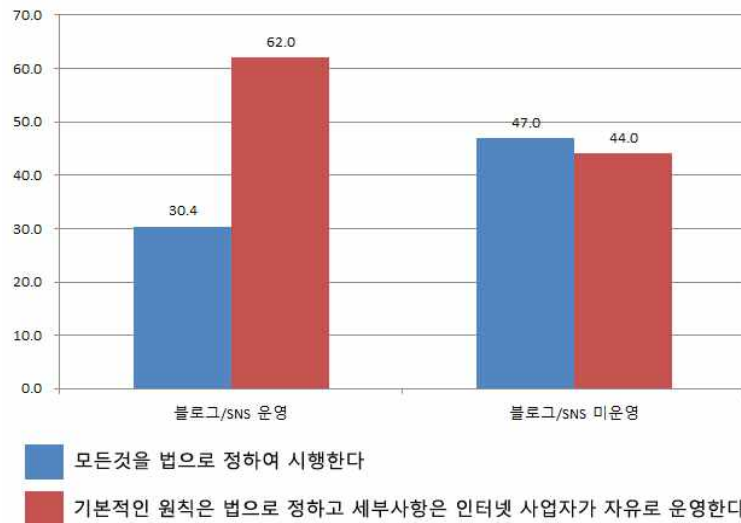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블로그나 SNS의 운영 여부에 따라서도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블로그 나 SNS를 운영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30.4%가, 운영하지 않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47.0%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모든 것을 법 으로 정하여 시행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응답자 중 62.0%, 운영하지 않는 응답자 중 44.0%가 원칙은 법으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운 영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4> 참고). 즉,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원칙은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다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13> 직업에 따른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단위: %)



<그림 14> 블로그·SNS 운영여부에 따른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단위: %)



4. 논의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기존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드물게 이루어졌던 논의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최근의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남길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가족의 디지털 유산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도 흥미롭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나 가족이 만든 공개 콘텐츠는 추억을 위해서도 타인에게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남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도 주목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하여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많은 응답자들이 기본적인 원칙은 법률적으로 필요하고, 세부적인 운영 부분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이용자들의 디지털 유산 관련 인식에 대하여 탐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향후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더 많은 이용자들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입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점차 사회적 이슈화 되어가고 있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제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ISO JOURNAL

19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김유향 /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1. 들어가며

2012년 5월 30일 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개원 초반이지만 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제19대 국회에서도 인터넷 및 미디어 관련 이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제18대 국회의 경우 인터넷 및 미디어 규제를 둘러싼 대립이 미디어법 논란을 계기로 정점에 달한 시기였기에 다양한 인터넷과 뉴미디어 관련 법안 제출이 붓물을 이룬 시기였으며,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인터넷 및 미디어 관련 이슈였다. 19대 국회의 경우 인터넷과 뉴미디어 관련 입법적·정책적 논의는 변화된 인터넷 생태계와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국면으

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차원에서 인터넷 규제가 시도되고, 관련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년간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인터넷 관련 법률안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19대 국회의 인터넷 관련 법안제출과 논의의 경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19대 국회 ICT 법률안 현황

최근 입법의 주요 특징으로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발의건수 급증을 들 수 있다.

<표 1> 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출 법률안 현황(2013.7.2)

		법률안명	건수
개정 법률 안	ICT	국가정보화기본법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5
		전자서명법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
		전기통신사업법	32
		정보통신공사사업법	2
		전파법	3
		통신비밀보호법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통신 융합	방송통신발전기본법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
		방송법	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7
		방송문화진흥회법	7
제정 법률 안	ICT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1
		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안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1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1
	방송·통신 융합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1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3 ¹⁾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1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1
		미디어교육지원법안	1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 참조 작성

예를 들면 16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2507건이었으나 17대 국회의 경우 7489건,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는 1391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회 개원 1년 1개월이 조금 경과한 7월 1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5472건에 이르고 있다.

상임위 별로 법률안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그 경향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7월 2일 현재 총 21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만의 특징은 아니며, 전 상임위에 걸쳐 의원입법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표 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현황

구분	접수	처리		미처리
		가결	부결 등	
합계	213	7	5	201
의원발의	196	2	5	189
위원회제안	3	3		0
정부제출	14	2		12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 참조 작성, 2013.7.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법률은 총 74건이며 그 중 인터넷, 방송, ICT 분야는 22건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가장 많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법은 총 32건이 제출된 「전

1)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관련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포함

2) 가장 많은 법률안이 제출되어있는 상임위는 721건이 제출된 안전행정위원회이며 그 뒤를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등이 잇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통계, 2013.7.1

기통신사업법」이며, 그외 「방송법」 28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3. 인터넷 및 뉴미디어 관련 주요 법률 현황 및 쟁점

현재 인터넷 규제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법률안들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문화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의 소관과 관련하여 제출되어 있다. 인터넷 규제 관련 가장 대표적 법률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3건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고, 그 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개정안과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인터넷 관련 법률안들의 경우 18대에서 제기된 이슈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출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은 본인 확인제 관련 현재의 위헌결정 이후의 후속조치, 그리고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의 차단과 관련하여 불법정보의 개념 재정의, 개인

정보의 수집 관련 조치, 온라인 광고산업 발전과 규제 관련 조치들, 임시조치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결정 이후 그 후속 법률적 조치와 관련한 내용들과, 최근 EU에서 제기하여 이슈가 되어온 잊혀질 권리의 법률적 구현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인터넷 게임 규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³⁾과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⁴⁾ 개정안 등 여성가족부 소관의 법률안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⁵⁾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등이 실질적으로 인터넷 규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법률들이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 도입 문제이다. 2012년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잊혀질 권리’ 도입을 제안하면서 잊혀질 권리를 법에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3)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3-01-08

4)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2013-01-08

5) 박성호의원 대표발의, 2013-06-03, 의안번호 1905294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⁶⁾ 제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이용자 본인 작성의 정보에 대한 삭제권한을 인정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또 정보통신망상의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초래하여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과의 충돌문제, 해외사업자와의 규제 불평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과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전반적 경향에 부합하는 법률이라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18대 국회부터 국회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야기해 온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인터넷 중독 예방 조치와 관련한 문제이다.⁷⁾ 손인춘의원 발의 법률안의 경우 제 23조에 셧다운제를 통한 보호대상 범위를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셧다운의 시간대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셧다운제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적용대상에

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병헌의원의 법률안도 제출되어 있어, 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관련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또한 셧다운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인터넷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13년 4월 30일 신의진의원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중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독에 대한 정의에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열거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즉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행행위와 인터넷 등 미디어 콘텐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들이 그것이다.

셋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인터넷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19대에서도 다시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다.⁸⁾ 대표적으로 손인춘의원 발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박성호의원 법률안의 경우, 콘텐츠산

6) 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013-02-12; 2013-04-02

7)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2013-01-08;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3-02-04의 경우 셧다운제의 제외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8)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3-01-08; 박성호의원 대표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6-03

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공텐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콘텐츠 유통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5/10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점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4. 나가며

이상에서 현재까지 제19대 국회에서 제안된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안들과 그 특징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19대 국회 전반기의 인

터넷과 관련한 주된 관심은 인터넷 상의 자기정보 삭제의 문제와 인터넷 포털의 공정성 이슈 등에 맞추어져 있다. 그 외에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신문사들과 포털간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포털의 뉴스서비스 문제, 포털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증대와 더불어 검색어 등의 공정성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인터넷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할 기술적 진전과 더불어 인터넷산업이 더욱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인터넷산업의 진흥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다. KISO JOURNAL



자율규제 관련 해외 기구 소개 및 최근 동향

김지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협력실 선임연구원

인터넷은 이제 하나의 미디어, 도구의 역할을 넘어 생활의 큰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인종, 세대가 공존하면서 오프라인 세상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이슈들이 온라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신상털기, 온라인 명예훼손 등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에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설립되었고, 인터넷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민사회와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넷과 관련 사회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율규제 활동에도 꾸준

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의 자율규제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1.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IWF는 영국의 독립적인 자율규제 기구로서 아동음란물이나 범죄 유발, 인종차별 표현이 포함된 콘텐츠에 대한 범국가적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6년 설립되었다. IWF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은 인터넷 산업, 법조계, 정부, 교육분야, 자선단체, 국제기구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매년 활동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 구글이 아동음란물 콘텐츠의 식별 및 처리 등을 위해 IWF에 100만 유로(약 15억원)를 기부한 소식이 전해졌다('13.6.12). 이

는 IWF의 연간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4년에 걸쳐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수지 하그리브스(Susie Hargreaves) IWF CEO는 더욱 숙련된 분석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한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구글과의 협력으로 향후 자율규제를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역시 아동음란물에 대해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IWF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리스트를 제공받는 등의 협력으로 더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알렸다.

<그림 1> IWF 웹사이트



IWF는 비단 아동음란물 콘텐츠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영국, 국제 경찰과 협력하여 실제로 성적 학대를 받고 있는 12명의 아동을 구출하는 등의 오프라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어, 온라인 이용자와 실제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IWF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이용자가 직접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영국 내 콘텐츠인 경우 해

당 사이트 관계자에게 게시 중단 통지도 보내고 있다.¹⁾ IWF에 대한 구글의 이와 같은 대규모의 기부가 아동음란물 자율규제에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

IWF(2013.6.12.). £1million donation for child sexual abuse charity. [Online] Available: <http://www.iwf.org.uk/about-iwf/news/post/358-1million-donation-for-child-sexual-abuse-charity>

IWF(2013.6.7.). Clarification of Internet Watch Foundation role removing criminally obscene adult content. [Online] Available: <http://www.iwf.org.uk/about-iwf/news/post/356-clarification-of-internet-watch-foundation-role-removing-criminally-obscene-adult-content>

IWF(2012). 2012 Annual Report. [Online] Available: <http://www.iwf.org.uk/assets/media/annual-reports/FINAL%20web-friendly%20IWF%202012%20Annual%20and%20Charity%20Report.pdf>

2. INHOPE

INHOPE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 콘텐츠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인

1) IWF의 2012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IWF에 접수된 일반 이용자의 신고 건수는 39,211건이며, 그 중 9,550건의 아동음란물이 삭제처리 됨

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구로서 유럽 연합의 후원과 IWF의 노력을 통해 1999년에 설립되었다. INHOPE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 등 약 37개의 주요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핫라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2> INHOPE 웹사이트



최근 INHOPE는 자율규제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신고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 국제 협력을 통한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말, '12년도의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INHOPE(2013)는 2012년 한 해 동안 약 106만 건의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그 중에서 약 42%가 북미지역, 40%가 유럽지역의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신고가 접수 되면 유럽이나 미국지역 등 대체로 80%에 육박하는 접수 건수가 1~3일 안에 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핫라인을 통하여 각 국가의 기관별로 주고받은 신고 건수는 약 3만 7천여 건이며 해가 갈수록 공조 건수가 증가하

고 있음을 알렸다. 성인물 콘텐츠 관련 피해자의 연령층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76%로 가장 많으며, 아동의 경우에도 그 수가 전년도 6%에 비해 2012년도 9%로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전하고 있다.

INHOPE는 이와 같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그간의 활동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는 등 더 나은 인터넷을 위한 국제적인 자율규제 노력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참고>

INHOPE(2013.5.22). INHOPE Annual Report 2012: 'Making a real difference'. [Online] Available: <http://inhope.pressdoc.com/46617-inhope-annual-report-2012-making-a-real-difference>

3. Insafe

Insafe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등 젊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을 촉진하고자 설립된 유럽의 기구이다. 특히 Insafe는 인터넷부터 모바일에 이르는 인터넷 전반의 활동에 대하여 환경, 문화, 기술 등의 인식 제고를 통해 보다 긍정적이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Insafe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Safer Internet Day(이하 SID) 행사가 개최되고 있

다. SID는 2004년을 시작으로 9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인터넷 캠페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SID에서는 주로 사이버 불링부터 소셜 네트워킹까지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주요 주제로 삼는데, 2013년 2월 5일에는 온라인에서 개인이 가지는 권리와 책임(online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초점을 맞춘 10번째 SID가 개최되었다.

<그림 3> Insafe 웹페이지



SID에서는 실시간으로 인터넷라디오방송을 통해 인터넷 예절, 상대방에 대한 존중, 관계 맺기, 전문가 질의응답 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각국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되었다. 올해 4월 공개된 SID 2013의 결과보고서(Insafe, 2013)에는 100개국의 1천만 명 이상, 16,150개 학교의 참여가 기록되어 있으며, SID 해시태그 #SID2013을 사용한 트윗의 수, 팔로워 수, 도달률 등을 분석하여 SID의 실증적 효과 분

석 등을 시도한 결과, 약 1천만명 이상에게 SID 콘텐츠의 효과가 도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4> SAFER INTERNET DAY 2014 로고



최근 Insafe는 SID 홈페이지를 통해 SID 2014의 개최를 알렸다. 2014년의 주제는 “더 나은 인터넷을 함께 만들어가자(Let's create a better internet together)”이며, 어린이부터 청소년, 부모와 교육자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행사 관련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각국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다.

<참고>

Insafe(2013). Safer Internet Day 2013 Public report.
[Online] Available:
http://www.saferinternetday.org/c/document_library/get_file?uuid=986e28f0-6ff9-46b4-95b4-213f02bc4162&groupId=10136

4. NAI(Network Advertising Initiative)

NAI는 미국의 자율규제 협회로서 건강한 온라인 광고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립되었다. NAI는 주로 개인화 광고의 운영 표준을 마련하고, 정확한 광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규약을 마련하여 회원사들이 이를 함께 이행해나가고 있다. 주요 회원사로는 마케팅 업체, 광고 솔루션 업체, 데이터 수집 관련 기술 솔루션 업체 등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의 서비스 업체를 포함한 약 5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림 5> NAI 웹페이지



NAI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개인의 쇼핑 정보 수집을 통해 제공되는 맞춤형 광고를 집행하기 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수집상의 문제에 대해 데이터 수집의 절차, 전달, 사용에 대한 과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민감한 개인정보의 활용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등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NAI는 회원사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율규약을 잘 이행해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자율규제 활동에 대하여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마다의 성과를 측정한다(NAI, 2013).

2013년 5월 말 NAI는 변화하는 광고 시장에 대응하고자 자율규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13.5.23).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개인영역의 정보, 즉, 일정, 주소록, 사진 등의 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구성되었고, 모바일 앱에 대한 첫 자율규약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내의 온라인 광고 환경과는 다르게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약이 마련되어 있지만, NAI의 자율규약 수정 등의 과정은 사업자 자율의 건강한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다. KISO JOURNAL

<참고>

Judith Aquino(2013.5.23.). NAI Unveils Revised Mobile Privacy Code. 『Ad Exchanger』. [Online] Available:

<http://www.adexchanger.com/mobile/nai-unveils-revised-mobile-privacy-code/>

NAI(2013). 2012 Annual Compliance Report. [Online] Available:
http://www.networkadvertising.org/2012_NAI_Compliance_Report.pdf

신상털기로 본 한국의 인터넷 문화

최항섭 /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4월 해외출장을 가던 한 대기업의 임원이 항공기 승무원에게 라면 맛을 트집 잡으면서 폭력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필자는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인터넷의 가십란에서 접하였다. 본능적으로 일이 커질 것을 예감하였다. ‘곧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겠구나’, ‘그 임원이 누구인지가 밝혀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한 인터넷신문에서 보도한 이 사건은 곧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1위를 차지하였고, 인터넷을 넘어 대형언론사와 방송국의 취재가 이어졌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2-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임원도 대체 누구냐라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사진과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누군가에 의해’ 제공되고, ‘누군가에 의해’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었다. 클릭 한 번으로 그 임원이 어떤 회사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며, 얼굴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임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가 이어

졌다. 사건이 중대한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서 그 대기업의 임원은 해고가 되었고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다. 권력을 가진 이가 그렇지 못한 이에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분노한 수많은 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그 분노를 결집시켰고, 그 분노의 표출에 있어서 신상털기가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대상이 명확하게 있어야 분노의 결집과 표출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 정부의 대변인이 대통령의 미국순방 과정에서 인턴을 하던 여성에 대해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들은 또 한 번 권력을 가진 자들의 권력남용과 부도덕함에 분노했다. 특히 그 대변인이 스스로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가이드’ 등의 단어를 써가면서 약자들에 대한 우월적 의식을 보이는 행위가 나타나 국민들의 분노가 증폭되었다. 인터넷은 또 한 번 뜨겁게 달구어졌다.

언론들 역시 맹비난에 나섰고 결국 이 대변인은 한국사회에서 ‘퇴출’되었다. 그런데 며칠 후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가 그 대변인에 의해 성추행 당했던 인터넷 여성이 누구인지를 사진과 정보까지 적어서 인터넷 상에 올린 것이다. 특히 미모의 사진에 대해 많은 댓글들이 ‘연예인급 미모이기 때문에 대변인에게 원인을 제공한 듯’, ‘오히려 이 여성이 대변인을 유혹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 약자를 보호해오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약자에게 오히려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진과 정보는 거짓인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피해여성에게는 자신에 대한 신상털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또 하나의 폭력이었다.

인터넷은 정보와 소통의 공간이다. 현대사회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 정보들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이루면서 이제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어졌고, 상상하기도 싫어졌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신에 대해 ‘감시하는 눈’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감시와 통제는 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쾌락을, 이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가져다준다. 철저한 권력의 비대칭의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은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은 나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한다. 문제의 발생은 도대체 무엇으로 시작된 것일까?

현대사회의 위험(risk)의 많은 부분은 ‘정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한다.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만들었고,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정보의 축적과 제공을 중심으로 한다. 즉 인터넷의 존재이유와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축적되고 제공되기 때문에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모두 자신의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에 제공되어 있다. 먼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조직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그 조직 구성원들이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합의되고 있다. 구성원의 사진은 물론이고, 이메일까지도 공개된다. 조직에 따라 상세한 약력까지도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엄청난 양의 개인신상정보들이 제공되며, 폭력적 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또 하나의 양상은 개인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신상을 노출하는 행위이다. 블로그, 싸이월드에서 이미 이러한 행위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어디에 갔다 왔는지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공개한다. 자신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수많은 사진들이 다른 이들에게 제공되고, 자신의 세계관, 정치적 견해, 문화

적 취향이 모두 제공된다. 특이한 것은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신상을 노출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과 같은 SNS의 등장으로 더욱 뚜렷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위 빅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신상정보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신상털기가 폭력적이라면 신상을 털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정보제공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는 인터넷의 퇴출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지니게 때문이다. 즉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을 버릴 수 없다면, 인터넷이 없는 시절도 돌아가기 싫다면, 인터넷상에 제공되는 정보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안고가야 하는 위험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질문을 던져보자. 신상정보들이 제공되더라도 그것을 털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도대체 다른 사람의 신상을 왜 터는 것인가? 왜 궁금해 하는 것인가? 이때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이해할 수도 있으며, 반대되는 관점에서 군중론적 관점에서도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가 전체 사회성원들의 공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누군가를 반드시 알아야 처벌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사회성원들의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때 신상털기가 이루어진다. 특

히 검찰, 경찰 등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때, 이 과정에서 무언가 음모가 있다고 판단되고 권력의 비호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이 될 때, 오히려 공권력을 믿기 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서로 협력하여 그 누군가에 대한 신상정보를 파헤치는 것이다. 특히 그 누군가가 연예인 등 사회적 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인물일 경우에는 이러한 신상정보 털기가 더욱 강도 높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지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덜어주는, 소위 ‘국민정서법’에는 합당하는 옳은 행위라고 생각한다. 결국 제도권을 믿고 맡겼다면 강자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결 났을 것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였기에 이는 사회적 공익에 크게 기여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한편, 전 정부대변인의 성추행 피해자인 인턴여성의 신상털기를 시도하고, 그 여성의 사진과 정보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 이는 위의 사례처럼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신상털기’를 했다고 믿는 사람과 다른 사람일까?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때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에 대한 신상털기의 주체는 대부분 남성이다. 그 여성이 피해자인지 아닌 지가 중요하지 않다. 성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여성이기에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을까? 어떤 외모를 하고 있을까?’라는 왜곡된 호기심이 작

동한다. 이는 그 여성을 몰래 엿보고 싶은 일종의 관음증에 기초한다. 그리고 신상을 털게 되었을 때 이 신상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죄의식이 커진다. 이때 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공유하게 한다. 다른 이들 역시 호기심으로 ‘그녀가 누구인가’를 엿보기 위해서 그 신상정보를 클릭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한다. 집단적 관음증이 작동하는 것이다. 집단적 관음증은 ‘마녀사냥’으로 연결된다. 사회가 불안할 때 그 사회의 불안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믿는 여성을 찾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여성에 대한 집단적 폭력을 가함으로써 개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동체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 마녀사냥이다. 인터넷성과 관련해서도 그녀의 피해사실을 오히려 부정하면서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댓글들에서 이러한 마녀사냥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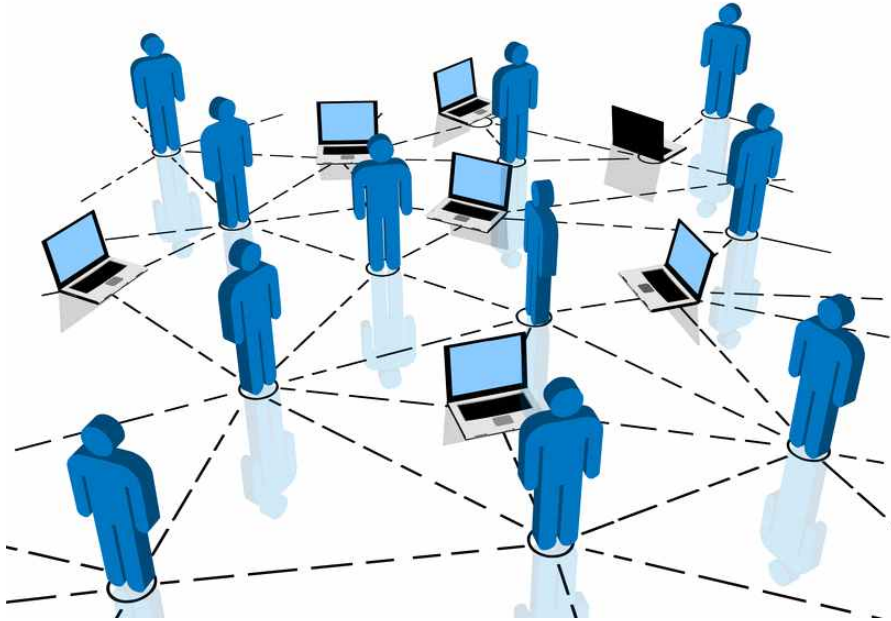
혹자는 이러한 광기 행위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학자 르봉은 ‘군중론’을 통해서 집단적 광기에 있어서 계층적 지위, 경제적 지위는 모두 사라지며, 군중 속에 들어가면 개인은 지극히 ‘정의로워지거나’, 지극히 ‘사악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앞으로 인터넷에서의 신상털기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가장 큰 이유는 페이스북 등 SNS 공간에서 개인들의 자발적인 사생활 노출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보는 구글 검색만 하면 너무나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특정한 해킹능력을 지닌 이들에 의한 신상털기가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너무나 평범한 이들에 의한 평범하지 않은 광기어린 행동들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고독하다. 사회로부터 인정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무대의 전면에서 서고 싶은데, 현실에서 자신은 항상 조연에 불과하다. 이때 무대의 전면에서 서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SNS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자신을 주인공의 모습으로 연출하는데, 이 연출의 요소 중 핵심적인 것이 사생활 정보이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폐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향후 신상털기가 더욱 확산될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방안은 ‘광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문화적 성숙도에 달려있다. 자신이 행한 클릭 한번, 공유 버튼 누르기 행위 한번이 신상을 털린 개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지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물론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클릭하는 행위 자체가 정보검색이며 공유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라는 것 자체가 한편의 시각에서 보면 정보의 차단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보의 공유, 정보의 검색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바로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침해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권리가 크게 손상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상털기의 유

혹을 극복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다. KISO JOURNAL

<참고문헌>

Le Bon, Gustave(1974). *psychologie des foules*. PUF: Paris.

GOFFMAN E.(1973). *La mise en scène de la vie quotidienne*, Paris, Editions de Minuit.

최항섭(2008). 정보사회에서의 지식 가치의 변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25권 4호, 223-255.

한국언론법학회 활동 소개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2007.01~2013.03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1. 꿈을 현실로 만든 학회

경험과 지식의 공유 가치를 주창하지만 학계에 종사하는 연구자와 현업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적지 않은 학문 분야에서 학계와 현업은 유리되어 있다. 또 융합과 통섭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서로 다른 학술적 경로를 밟아온 학자들이 한 학회의 깃발 아래 모여 활동하기도 결코 용이하지 않다. 21세기가 열리자마자 어울리기는커녕 섞이기조차 어려운 것 같은 학계와 현업, 이질적인 학문들에 산포된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학술 목표를 추구한다고 했으니 어찌 꿈이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 꿈을 현실화 한 학회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술 활동의 성과를 좋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법조계와 언론계 실무자, 법학과 언론학자들이 ‘한 우물’을 파고들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한국언론법학회(Korean Society for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는 헌법·공법을 전공한 법학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언론학자, 현직 판사와 변호사,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학회이다. 1999년 말부터 2년여의 준비 작업을 거쳐 2002년 2월 8일 창립되었다. 김진홍·원우현·이구현·정연구·윤영철·유일상·이구현 교수를 비롯한 여러 언론학자 및 성낙인·정정길·이재상·김철 교수 등 여러 명의 법학자 그리고 박형상·안상운·배금자 변호사 등 다수의 법조인들이 창립 멤버가 되었다. 학회는 정관을 통해 학술 활동의 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정했다. 첫째는 언론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제 영역의 법적인 영역이고 두 번째는 윤리적 영역이며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정책 부문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학문과 제도가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윤리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과 정책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며 일련의 정책이 윤리를 토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언론법학회가 영문 학회 이름에 ‘Media Law, Ethics and Policy’를 포함시킨 것은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년간의 임기제인 회장은 원우현·김진홍·유일상 등 세 분의 언론학자가 1-3대 회장을 맡아 학회의 기틀을 다졌다. 2007년부터는 권영설 전 중앙대 법대 교수, 한위수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 2년간의 회장직을 맡아 학회 활동의 내실과 외연 확대를 이루었다. 현재 학회장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재협 변호사가 맡고 있다. 회원 수는 200여명으로 많지 않으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연구자들이 많아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와 쟁점 세미나 장은 언제나 진지하고 뜨겁다.

2. 올해의 판결과 철우 언론법상

최근 몇 개 언론 매체와 단체에서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언론법학회는 창립한 2002년부터 이미 ‘올해의 판결’과 ‘올해의 연구자’ 등 ‘철우 언론법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초대 회장을 지낸 원우현 학회 고문이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철우 언론법상은 언론법의 학문적·사회적 발전에 큰 힘을 보탠 뛰어난 연구자와 판례를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학술상은 대부분의 학회들이 수여하고 있지만 판례에 대해 학회가 상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권영성·허영·박용상·권영설·성낙인 등 역대 심사위원장들의 면면이 말해주듯 철우 언론법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상의 권위를 높여왔다.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철우 언론법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현재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들은 인터넷상의 표현 자유 확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공적인물·공적사안의 법리 적용,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의 위헌 결정, 반론제도와 방송광고판매제도, 야간집회의 자유 등 다양한 영역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표 1> 철우언론법상 수상자

회	연도	수상자	수상 판례
1	2002	박용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헌재 2002.06.27. 99헌마480)
2	2003	박선영(카톨릭대 법대교수)	남성우 KBS PD와 '한국논단' 간 손해배상사건 (대법원 2002.12.24. 2000다14613)
3	2004	김옥조(한림대 객원교수) 김재협(수원지법 부장판사)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헌재 2003.12.18. 2002헌바49)
4	2005	김재형(서울대 법대교수)	서적발행·판매·반포 등 금지가처분 (대법원 2005.01.17. 2003마1477)
5	2006	윤재윤(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석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반론보도심판청구 (대법원 2006.02.10. 2002다49040)
6	2007	한위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없음
7	2008	문재완(한국외국어대 법대교수)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08.06.26. 2005헌마506)
8	2009	이재진(한양대 신문방송학과교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대행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08.11.27. 2006헌마352) 포털사이트 인격권침해 부분 인정 (대법원 2009.04.16. 2008다53812)
9	2010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교수)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2009.09.24. 2008헌가25)
10	2011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헌재 2010.12.28. 헌바157, 2009헌바88(병합))
11	2012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교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등 위헌확인 (헌재 2011.12.29. 2007헌마1001등 (병합))

3. '현실적 모의재판'과 언론법학 교육

한국언론법학회는 정기학술대회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쟁점들에 대한 기획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해 왔다. 공법·헌법 전공자들과 언론학을 공부한 학자·현역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 협력한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컸다. 2002년 개최한 '한국 언론의 현황과 공인의 명예훼손' 세미나는 공인과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고찰, 집단소송과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언론과 공익의 윤리적 문제와 명예훼손 등 언론보도와 공인의 명예

훼손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학술 행사였다. 이후 언론법학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보도의 문제,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뉴미디어 저널리즘의 법적 문제와 현황, 전문영역의 언론보도와 법원의 판결,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인터넷포털 문화와 비교법제, UCC의 언론법적 검토,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선거보도, 정보화시대의 성 표현과 청소년보호 등을 주제로 학술 활동을 벌였다. 2010년 이후 최근 3년 간 언론법학회가 기획하고 개최한 주요 학술 세미나 주제는 다음 표에 정리한 것과 같다.

<표 2> 최근 3년간 언론법학회 주요 학술 세미나 주제

년월	주제	년월	주제
2010.10.	지상파 재송신 분쟁의 진단과 해결 전망	2011.10.	망중립성 문제의 현안과 전망
2010.10.	최근 인터넷·스마트폰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2012.6.	방송사 지배구조와 방송편성권
2010.12.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지상파 방송의 역할	2012.8.	방송통신정책의 법적 과제의 진단과 전망
2011.3.	언론법의 최근 동향 분석	2012.9.	인터넷언론의 변화와 선거보도 공정성 확보방안
2011.6.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방송광고제도의 현황과 전망	2012.12.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법적 문제
2011.9.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2013.2.	방송통신융합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운영실태와 법적 쟁점

한국언론법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언론과 법>을 연간 2회에 걸쳐 발행하고 있다. 그동안 동 학술지에는 현역 판사·변호사·기자 등의 현업 실무자들과 법학·언론학 분야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우수한 학술적 성과를 게재해 왔다. 언론법학회는 학술지 발행, 학술세미나 개최, 철우언론법상 수여 등의 활동 외에 2011년부터 매년 ‘언론법 모의 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언론법 전문가를 꿈꾸는 로스쿨 재학생과 언론학·법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언론법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이다. 필자가 명예훼손법의 주요 개념인 ‘현실적 악의’를 차용하여 이 모의재판을 ‘현실적 모의재판’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3인 1조가 된 참여자들은 3개의 모의 재판부에서 각각 원고와 피고로 역할을 번갈아가며 다투게 되는데 현실의 언론소송에서 다루어졌거나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이 경연대회의

문제로 출제된다. 두 번째는 모의 재판부 구성은 언론법학자 뿐만 아니라 전·현직 부장판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모의재판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언론법학회가 연구와 실무에서 얻은 경험들을 후진 양성에 적극적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한국언론법학회는 헌법·공법학계와 언론학계의 중견학자들이 상호 이해와 교류를 바탕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1970·80년대 한국의 학계에 ‘언론법 연구’의 단초를 마련한 제1세대 언론법학자들에게 교육받은 제2세대 연구자들이 언론법이라는 학문의 전통을 성공적으로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언론법학회를 매개로 하여 법학자들의 상당수가 언론관련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언론학회 회원들이 법학관련 학회의 회원으로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인적 교류를 넘어선, 법학과 언론학, 법조와 언론계

의 언론법 연구를 위한 ‘화학적 결합’의 중심 줄 것으로 기대한다. KISO
역할을 앞으로도 한국언론법학회가 수행해

<그림> 2012년 개최된 ‘2012 언론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입상자들과 모의재판부 재판관들의 기념
촬영사진



열린 정부 만들기의 선행조건

: ‘열린 정부 만들기’ 리뷰

김재연 /Global Voices Online 소속 활동가

제목	열린 정부 만들기 -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정부2.0 프로젝트	원제	Open Government - Collaboration,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in Practice
저자	팀 오라일리 등저 / 다니엘 래드롭, 로렐 루마 공편	역자	CC KOREA 자원활동가
출판사	에이콘출판사	출간일	2012년 2월 29일

1. 21세기의 새로운 인프라, 열린 정부

1) 21 세기의 새로운 인프라 열린 정부

새로운 인프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다. 철도는 교통만 편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철도는 거리의 개념을 바꿨다. 미국을 횡단하는 철도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미국 동부와 중부보다 동부와 유럽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웠다. 미국은 사실상 척박한 개척이 이뤄지던 중부와 유럽과의 교역으로 상대적 풍요를 누리던 동부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상황에서 철도 건설은 미국 동부와 중부를 통합시켰고, 국가 단위의 통일된 시장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것인가? 닷컴 버블 이후 개방, 공유, 참여의 가치를 내건 ‘웹 2.0’을 새로운 IT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한 것으로 유명한 디지털 사상가 오라일리 등이 편집한 『열린 정부 만들기』는 이 질문에 관련해 새로운 질문을 제시한다. 기존의 관련 서적들이 21세기의 정보통신 혁명이 어떻게 비즈니스 영역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제시하는 데 반면해 이 책은 해당 기술적 변화가 어떻게 관료제를, 정부 영역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열린 정부를 말한다. 개방된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와 시민이 함께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역설한다.

2) 사이트 방문자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의 숫자가 열린 정부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논리 전개 방식은 연역이 아니라 귀납이다. 기술적 조건이 어떻게 변화했고 이에 따라 거래비용이 어떻게 감소했으며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가능함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현장을 전혀 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자료 분석으로만 현실을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대신에 오라일리를 비롯한 이 책의 편집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이론가, 활동가들을 저자로 초빙해 그들이 직접 실행하고, 참여했던 열린 정부 프로젝트들에 대해 설명하게 한다. 그 중에는 학술 영역의 개방성 확대를 위해 해킹을 사용했다가 미국 정부와 마찰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다 2013년 1월 11일 자살로 세상을 떠난 인터넷 기업가, 개발자, 그리고 활동가인 아론 슈와츠를 포함한다.

슈와츠는 자신이 기술한 투명성의 효용 증대에 관련된 25장의 결론부에서 인터넷이 위대한 까닭은 단순히 정보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보다 비교가 안될 만큼 적은 비용으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행동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

라 주장한다. 슈와츠는 위키가 인기를 끄니까 위키를 정치에 적용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유행을 타니까 정치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그러한 기술 자체가 어떠한 마법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에 적절하게 적용이 됐을 때 임팩트가 나오는 것이라 강조한다. 월드와이드웹(WWW)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는 그저 해당 기술을 인터넷 상에서 공개한 것만으로 세상을 바꿨지만, 슈와츠는 정치는, 정부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열린 정부를 위한 개발자의 성공은 자신의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숫자로 측정된다.

기실 이러한 실용적 기조는 총34장에 달하는 책의 다른 장도 다르지 않다. 이 책의 모든 장의 사례 분석은 의회(15장, 16장)가 됐든, 정부 예산(17장, 18장, 19장, 20장)이 됐든 특정한 변화 대상을 주제로 한다. 그리고 해당 변화 대상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했는지가 성과의 기준이 된다. 열린 정부 만들기는 정부뿐 아니라 그 정부를 바꾸는 개혁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도 요구한다.

2. 열린 정부 만들기의 선행조건

1) 열린 정부는 단기적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열린 정부 만들기』가 내포하는 결과와 과정 모두에서의 실용주의는 현재 열린 정부의 바람이 불고 있는 한국 정부도 생각해볼만한 주제다. 정부 데이터가 얼마나 공개됐는지, 혹은 열린 정부 관련 프로젝트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단순 실적 위주 평가 기준만으로는 사이트 방문자수를 넘어서 실제 변화된 사람이 얼마인지 알기는 어렵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당면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 문제들이 열린 정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일례로 각 분기별, 연별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한다. 흔히 정보통신혁명을 통한 사회적 변화는 '과격적 혁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슈와츠가 말한 것처럼 정치, 정부 영역은 특수성이 있다. 다양한 사회 이익 집단의 의사 조율을 통해서 사회 갈등을 순화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 행정은 단기적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을 목표로 한다. 그러한 철칙은 열린 정부 만들기도 마찬가지다. 2012년 개최됐던 서울 디지털 포럼의 정부 2.0 심화세션에서도 팀 오라일리가 “정부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전부 다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를 택하는 극단주의라고 지적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작은 것이 위대한 것이다.

2) 한국은 얼마나 인터넷으로 열린 정부하기 좋은 나라인가

그러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다시 이 책을 보면 미국 사회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중점으로 한 해당 책의 국내 현실 적용상 약점은 한국 활동가들이 처한 현실이 미국 활동가들과 다르다는 점이다. 여기서 활동가를 중점으로 논하는 까닭은 열린 정부 만들기의 대상은 정부일지라도 그 주체는 시민이고, 그 시민 중에서도 해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활동가(activist)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열린 정부 만들기』에 소개된 정부 데이터 공개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선라이트 재단(Sunlight Foundation)의 후원을 받는다. 나이트 재단(Knight Foundation)은 언론 개혁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코프만 재단(Kauffman Foundation)은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지원을 한다. 책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았으나 뉴 아메리카 재단(New American Foundation)도 최근 인터넷을 통한 미국 정치 개혁 프로젝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미국 현실에 비해 한국에서 시민들이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열린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국내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재정 지원은 대부분 정부 예산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역설인 것은 개혁의 대상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에 비판

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예산 감시와 같은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기업은 어떨까? 미국에서는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아들인 에드셀 포드가 1936년에 설립한 포드 재단(Ford Foundation)이 미국 사회의 학술적, 예술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SK가 설립한 고등교육재단이 한국의 고급 학술 인력 육성에 공헌했다. 따라서 아직은 열린 정부 만들기에 크게 관심을 갖는 민간 재단은 거의 없으나 그러한 재단이 등장한다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크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운영이 비영리, 비당파성이다. 열린 정부는 개혁은 물론, 그 개혁의 자금원 역시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요구한다.

달리 말하면 열린 정부 만들기는 정부가 여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정부를 바꾸는 그 과정과 결과와 원인의 총체적 변화를 뜻한다. 새로운 인프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다. KISO JOURNAL

<참고문헌>

팀 오라일리, 다니엘 레드롭, 로렐 루마편, CC KOREA 자원활동가역(2012). 『열린 정부 만들기』. 서울: 에이콘출판.

CC KOREA(2012). 2012 서울디지털포럼 정부 2.0 심화세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Online] Available : http://www.cckorea.org/xe/?document_srl=260939.



한·일의 신우익, 그 비동시성의 동시성 : ‘거리로 나선 넷우익’ 리뷰

박권일 / 칼럼니스트
<88만원세대>, <소수의견> 저자

제목	거리로 나온 넷우익 -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보수가 되었는가	원제	ネットと愛國 - 在特會の「闇」を追いかけて
저자	야스다 고이치	역자	김현욱
출판사	후마니타스	출간일	2013년 5월 27일

프리랜서 르포라이터인 야스다 고이치의 <인터넷과 애국: 재특회의 어둠을 쫓아서>는 2012년 4월 출간 즉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하 재특회)’을 1년 반 넘게 추적해 기록한 르포르타주이다. 한국에는 <거리로 나온 넷우익>이란 제목으로 2013년 5월 27일 번역출간되었다. 마침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 직후였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라는 사이트가 광주항쟁 희생자의 당시 관 사진을 두고 “홍어택배” 운운하는 발언을 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던 무렵이다. ‘일베현상’과 맞물려, 일본의 재특회도 담론의 중심으로 단숨에 빨려들어왔다.

일베라는 한국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거리로 나온 넷우익>은 하나의 완성도 높은 르포로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가장 큰 장점은 저자 야스다 고이치의 글이 지닌 흡인력이다. 그야말로 박진감이 넘친다. 읽기 전에는 정치적·이념적 맥락에 관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따분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가졌다. 기우였다. 저자는 그런 사회적 맥락을 최대한 살려내면서도 관념적이거나 현학적인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고 군데군데 자신의 날카로운 통찰을 덧붙이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인간군상을 묘사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발자크적 집념’이다. 그는 재특회의 극단적 인물들을 만나 말

을 걸고, 이야기를 듣고, 언쟁을 벌이고, 때로 먹살잡이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면서도 구체적인 인간의 냉철한 기록자라는 본분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래서 재특회와 그 주변 인물 하나하나를 나름의 곡절과 사연을 지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우선 재특회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 단체는 2007년 1월 설립됐다. 회장은 사쿠라이 마코토(본명 다카다 마코토)이다. 원래 사쿠라이 마코토는 2ch이라는 일본 최대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동해온 '인터넷 논객'이다. 특히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명인이었다. 그는 역사 교과서에 적힌 중군위안부의 비참한 처지가 모두 엉터리이고,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일코리안(한국계와 총련계를 통칭)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서 "반도로 돌아가라"라고 말한다. 또 오늘날 일본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국가가 지원금을 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재일코리안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복지에 무임승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그의 선동적인 발언들이 인터넷과 극우성향의 케이블방송 '채널사쿠라'를 통해 알려지자 지지자들과 팬들이 급속히 늘어났다. 사쿠라이 마코토를 위시한 네티즌들은 인터넷 스터디그룹인 동아시아문제연구회를 만들었다. 이것이 사실상 재특회의 전신이다.

재특회는 단지 인터넷에 글을 쓰는 활동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확성기를 들고 직접 거리로 나섰다. "바퀴벌레 조선인, 반도로 돌아가라!" "짱개들을 도쿄만에 처넣어라!" "극좌세력을 바다에 빠뜨려라!" "한국인이 보이면 돌을 던져라!" 험악한 말투와 적나라한 욕설을 사용하는 이들은 순식간에 일본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리더와 활동가 조직을 갖춘 네티즌의 등장은 야스다 고이치의 말을 빌리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때까지 네티즌이란 과격한 발언을 하는 해도 그저 인터넷이라는 '창간 속의 태풍'일 뿐이었다. 현실세계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특회는 그런 선입견을 산산조각 내며 어마어마한 활동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재특회의 오프라인 활동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회원 수는 물론이고 단체 후원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한류 연예인의 공방입국을 막으면서 한국언론의 취재대상이 되기도 했다. 재특회는 순식간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우익단체 중 하나로 올라섰다.

재특회의 특징은 특유의 저열한 언어와 시위방식 탓에 기존의 우익세력들로부터도 강하게 비판받는다는 점이다. 재특회가 만들어지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신우익의 "어른들"은 재특회가 조직으로 성장할수록 거리를 두거나 떠나갔다. 1960·70년대 학생운동을 경험한 세대가 자신이 몸담았던 좌익은 물론, 전통적인 우익세력까지 비판하며 새로

운 우파 블록을 형성했는데 이들을 통칭해 일본에서는 신우익이라 부른다. 재특회 역시 크게는 신우익의 흐름에 속한다(다만 인터넷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신우익과 구별해서 보통 '넷우익'이라고 지칭한다). 신우익의 어른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한결같다. "재특회에는 사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특회를 두고 욕설과 감정의 표출만 있을 뿐 운동의 이상이랄까 목표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재특회측은 "우익 세력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도대체 한 게 뭐냐"고 받아친다. 확실히 정치나 사회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끌어들인 재특회의 대중동원력은 어떤 일본의 우익도 못해낸 일이긴 했다. 달리 생각해보면 오히려 사상과 철학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토록 사람들이 쉽게 재특회의 문턱을 넘어 회원이 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경향에 대해 내부에서도 불만이 없지는 않다. 초기에 재특회의 주장에 공감해서 가입해 활동하던 고참회원들과 지부장급 간부들 중 상당수는 최근 조직의 반민주성과 운영방향에 실망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같이 활동하고는 있지만 이미 열정이 많이 식어버린 상황이라고 야스다 고이치는 쓰고 있다.

'재특회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야스다 고이치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의 이웃입니다". 한국의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 상당수는 일베를 '루저(낙오자)들의 집합소'로 또는 '인간말종의 소굴'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마치 외계에서 떨어진 괴물인 것처럼 예외화시키려든다. 하지만 일베는 몇몇 사이코패스의 모임이 아니라 동시접속자 수가 2만 명이 넘는 거대 사이트다. 그곳의 저열한 차별적 언어들, 극단적 인종주의를 그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규탄하거나 재갈을 물리거나 '루저'라 딱지 붙인다고 해서 일베라는 현상, 극우 멘탈리티의 폭발적 분출이 사라지진 않는다.

재특회와는 달리 일베는 아직 거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시민교육의 부재라는 조건 하에서는 언제든 재특회와 같은 조직이 한국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다. 야스다 고이치는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출간기념대담에서 "한국의 일베도 재특회처럼 거리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한국사회의 대응에 달려있다. 재특회가 처음 나왔을 때 일본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주변화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정면에서 대응해야 한다. 형사처벌 같은 것보다 시민의 힘으로 제어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은 전혀 다른 사회이지만 다른 어떤 사회들보다 유사한 면도 많다. 특히 불황 이후의 일본사회에서 보이는 불안의 징후들과 최근 한국사회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겹치는 지점들이 있다. 반이주노동자 담론, 내부의 타자(일본에서는 재일 코리안, 한국에

선 전라도 사람)를 향하는 혐오와 적개심들은 자신의 몫을 무능력자와 무자격자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식의, 이를테면 '상상된 착취'의 심리적 산출물이다. 결국, 재특회건 일베건 그 사회의 핵심적인 일면을 드러내는 신호이다. 책의 말미, 야스다 고이치의 다음과 같은 말이 섬뜩하면서도 절절하게 와 닿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사람 좋은 아저씨나 착해 보이는 아줌마, 예의바른 젊은이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작은 분노가 재특회를 만들고 키운다. 거리에서 소리치는 녀석들은 그 위에 고인 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저변에는 복잡하게 얽힌 증오의 지하수맥이 펼쳐져 있다." KISO JOURNAL



KISO, 인터넷 음란물 근절 캠페인 실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하는 인터넷 음란물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캠페인페이지를 통해 음란물의 개념과 관련 법령, 관련 판례 등이 제공되었으며, 이 캠페인은 2013년 3월 22일(금)부터 4월 5일(금)까지 실시되었다. KISO

<그림> KISO 인터넷 음란물 근절 캠페인 페이지



2013 KISO 상반기 워크숍 개최

KISO가 2013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13 KISO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KISO의 정책위원, 저널 편집위원, 온라인 광고심의위원, 검증위원 및 회원사 관계자가 참여하여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관련 정책결정과 향후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KISO는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앞으로도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KISO JOURNAL

<그림> 2013 KISO 상반기 워크숍 현장



<KISO저널 제11호>

발행일 2013.6.28.

발행인 최세훈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디자인 명진씨앤피

121-9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102호

대표전화 02-563-4955

이메일 kiso@kiso.or.kr

KISO 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사)한국인
터넷자율정책기구 기획협력실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

위원장/황용석 교수(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권현영 교수(광운대 법학과)

김유향 팀장(국회 입법조사처)

박준석 팀장(Daum 고객센터기획팀)

이원태 박사(KISDI 미래융합연구실)

태해진 팀장(SK커뮤니케이션즈 대외협력팀)

한종호 이사(NHN 정책실)



ISSN 2287-8866(Online)